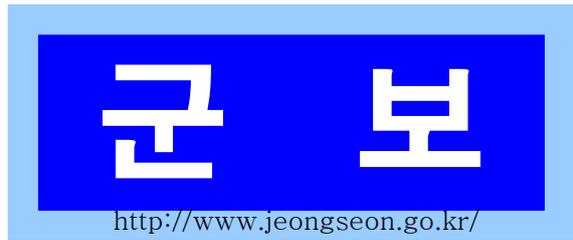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22호 2010. 7. 21. (수)

##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0-100호 정선 하늘공원 이용에 따른 매장·봉안묘역 설치 부대비용 정정 고시..... 1
- 정선군고시 제2010-103호 정선군 소하천 구역 등 지형도면 변경 고시..... 2

##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0-386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3
- 정선군공고 제2010-391호 취득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4
- 정선군공고 제2010-392호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5
- 정선군공고 제2010-401호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안) 행정예고..... 6
- 정선군공고 제2010-406호 초지지역·지구등의 지정(해제) 열람 공고(안).....10
- 정선군공고 제2010-407호 재산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14
- 정선군공고 제2010-408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17
- 정선군공고 제2010-409호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22
-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공고 제2010-48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24
- 강원도공고 제2010-446호 2010년도 제1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고시 제2010-100호

- 정선 하늘공원 이용에 따른 -  
매장·봉안묘역 설치 부대비용 정정 고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 하늘공원 운영에 대한 매장·봉안묘역 설치 부대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 7. 14

정 선 군 수

## 1. 매장·봉안묘역 설치 부대비용

(단위 : 원)

구 분		관리비	석물비	매장비	비고
매장	단장	300,000	700,000	500,000	
	합장	390,000	800,000	500,000	
가족봉안묘(12기)		480,000	2,200,000	500,000	

주) ① 매장비에 석물설치비 포함

② 석물비중 글씨 가격은 별도

(큰 글씨 : 자당 8,000원, 작은 글씨 : 자당 800원)

③ 매장중 합장묘의 경우 와비에 새겨지는 글씨 추가에 대한 와비 운반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

## 2. 적용시기 : 정선 하늘공원 개원시 적용

(단, 물가 상승에 따른 변동 발생시 변경고시 가능)

## 정선군고시 제2010-103호

## 정선군 소하천 구역 등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정선군 고시 제2009-176호(2009.12.22)로 고시한 정선군 소하천구역 등 지형도면고시와 관련하여 화암면 석곡리 소하천(하돌목천) 일부구간이 용도폐지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선군 소하천구역등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7. 19.

정 선 군 수

가. 변경고시 사유 : 화암면 석곡리 소하천(하돌목천)의 1250-1번지(구거) 일부가 소하천으로서의 용도가 폐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 인계·인수됨에 따라 정선군 소하천구역등의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1250-1번지 일원

다. 지형도면 변경조서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지 번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정선군	소하천구역 전체			9,311,922	감)296	9,311,626	-
화암면	하돌목천	11-20-083	소 계	26,851	감)296	26,555	예정지 포함
			1250-1구	21,636	감)296	21,340	용도폐지

라. 지형도면 변경고시 도면 : 게재생략(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 비치)

정선군공고 제2010-386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6.  
정 선 군 수

- 1. 사 업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 2. 도로 위치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산219, 291-3
- 3. 도로 길이 : 35m
- 4. 도로폭(지정) : 3.65m ~ 8.27m
- 5. 도로면적 : 160 m<sup>2</sup>
- 6. 지번별 도로부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정면적(m <sup>2</sup> )	토지소유자	비고
북평면 북평리	산219	138m <sup>2</sup>	여인원	
북평면 북평리	291-3	22m <sup>2</sup>	박종실	

## 정선군공고 제2010-391호

## 취득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 성 명 : 이혜숙 외 5인
- 주소또는거소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115
-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납부고지서
- 서류의 내용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2010년 6월 중 귀하의 주소지·거소지·사무소 등록지로 고지(일반우편·등기우편)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기한내 고지가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인 2010년 7월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7. 8.

정 선 군 수

## &lt;공시송달 내역&gt;

발송지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115 (1통4반)	이혜숙	토지 정선읍 덕송리 478-3번지 3160.0000㎡ 매매	수령인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 메트로디오빌 빌딩 1708호	대원건설	토지 사북읍 사북리 272번지외 2필 지 3041.0000㎡ 경락공매	수령인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7 (9통1반)	오윤영	토지 신동읍 조동리 산 63-44번지 3300.0000㎡ 매매	수령인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5-1 논현휴먼시아 하늘마을 306동 404호 (17통1반)	전제빈	토지 남면 광덕리 1044-1번지 2159.0000㎡ 매매	수령인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31 청구빌딩	소평개발	토지 임계면 반천리 산 205-1번지 외 3필지 255170.0000㎡ 매매	수령인없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 1	디에스파인	광업권 69417, 69418	수령인없음

## 정선군공고 제2010-392호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7월 28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9.  
정 선 군 수

## 1. 열람기간

2010년 7월 14일부터  
2010년 7월 16일까지 } 3일간(공휴일에 불구함)

## 2.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 없음)

## 3. 열람장소

장 소 명	소 재 지	비 고
정선읍사무소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31(봉양리 210-1)	
고한읍사무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고한리 125-4)	
사북읍사무소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65(사북리 317-48)	
신동읍사무소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예미리 759)	
화암면사무소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화암리 393-1)	
남 면사무소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문곡리 103-1)	
여량면사무소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여량리 305-3)	
북평면사무소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북평리 222-2)	
임계면사무소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송계리 773-1)	

4.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jeongseon.go.kr>

## 5. 인터넷 열람방법

정선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거인명부 열람 배너창의 선거인명부 열람을 클릭하시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군공고 제2010-401호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안) 행정예고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시설물의 안전 관리 및 운영상태의 감시, 화재예방 등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0. 7. 15.

정 선 군 수

1. 취지

최근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2배가량 높으며('06년 기준 : 일본163명, 독일136명, 한국 276명), 어린이가 외부위험에 노출되면서 유괴 실종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범죄예방 및 통제수단으로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 하고자, 행정예고를 통해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함.

2. 행정예고사항

가.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 계획(안)

연번	관리부서 (관리주체)	설치장소	비 고
1	건설도시과	정선읍 봉양리 1-124 (봉양초등학교)	생활방법
2	건설도시과	화암면 백전리 352-2 (백전초등학교)	생활방법
3	건설도시과	북평면 남평리 392 (남평초등학교)	생활방법
4	건설도시과	정선읍 용탄리 691-29 (벽탄초등학교)	생활방법
5	건설도시과	고한읍 고한리 274-163(갈래초등학교)	생활방법

나. 위치도

1) 봉양초교后门 진입로



2) 백전초교 정문 진입로



3) 남평초교 정문 진입로



4) 벽탄초교 정문 진입로



5) 갈래초교 정문 진입로



3.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2010년 7월 16일 ~ 2010년 08월 04일

나.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0년 08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 반대 의견시 그 사유를 기재)
- 2)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행정예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우 233-804)
- 전화번호 : (033)560-2486 FAX) 033-560-2596

라. 위 의견제출 기간까지 제출 의견이 없을 경우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끝.

## 정선군공고 제2010-406호

## 초지지역 · 지구등의 지정(해제) 열람 공고(안)

초지법 제24조의2제1항5호 및 시행령제16조의4제3호의 규정에 의거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실시하는 지역, 지구등의 지정(해제)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7. 16.

정 선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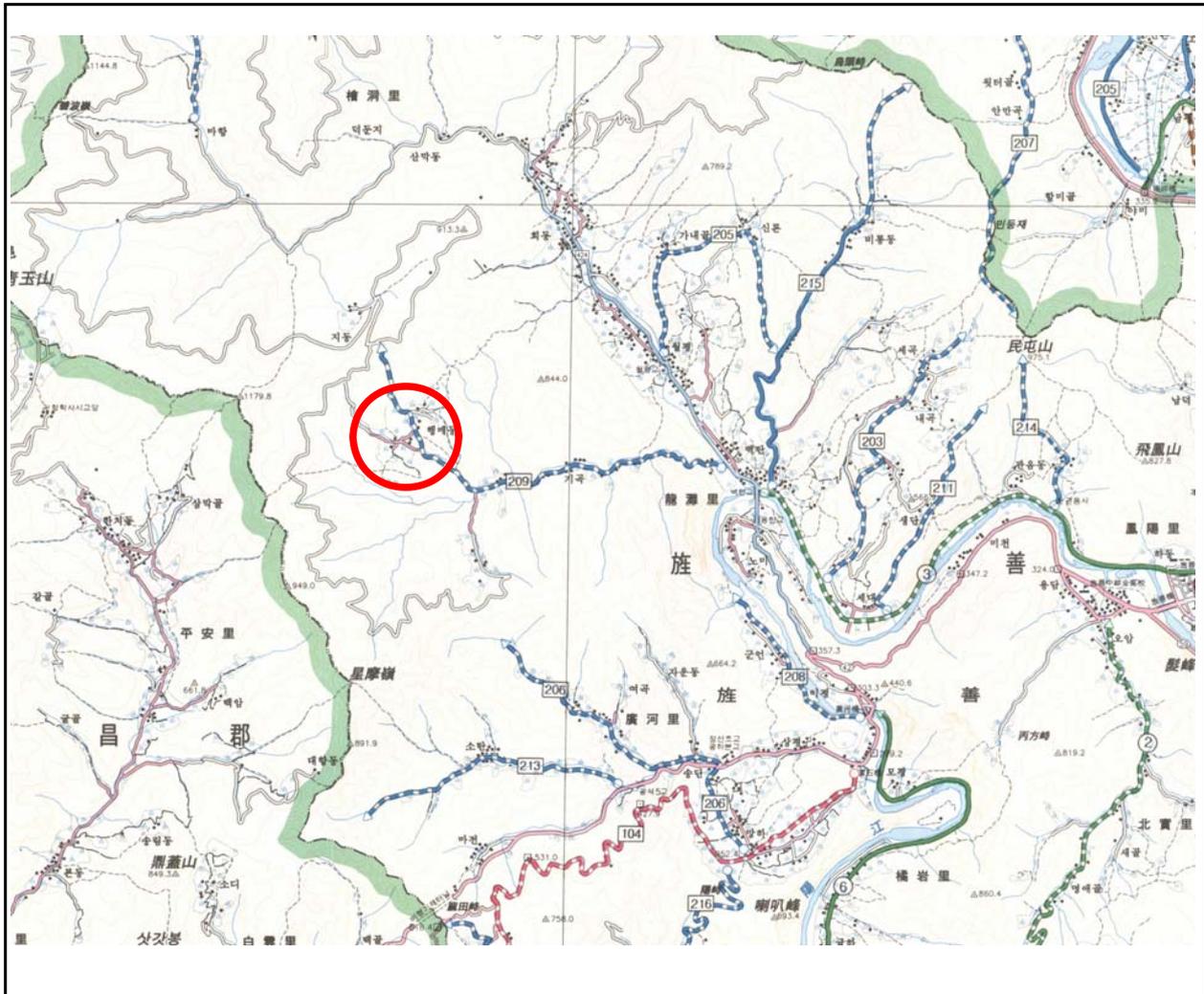
1. 공고기간 ; 2010. 07. 19. ~ 2010. 08. 02. (15일간)
2.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공고기간내
3. 열람장소 :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033-560-2985)
4. 관계도서 및 필지별 내역 : 게재생략
5. 의견제출 : 공고한 도서 및 필지별 내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정선군청 농업정책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내역서
  -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다. 의견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 등
6. 초지지역, 지구등의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열람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축산지원팀(033-560-29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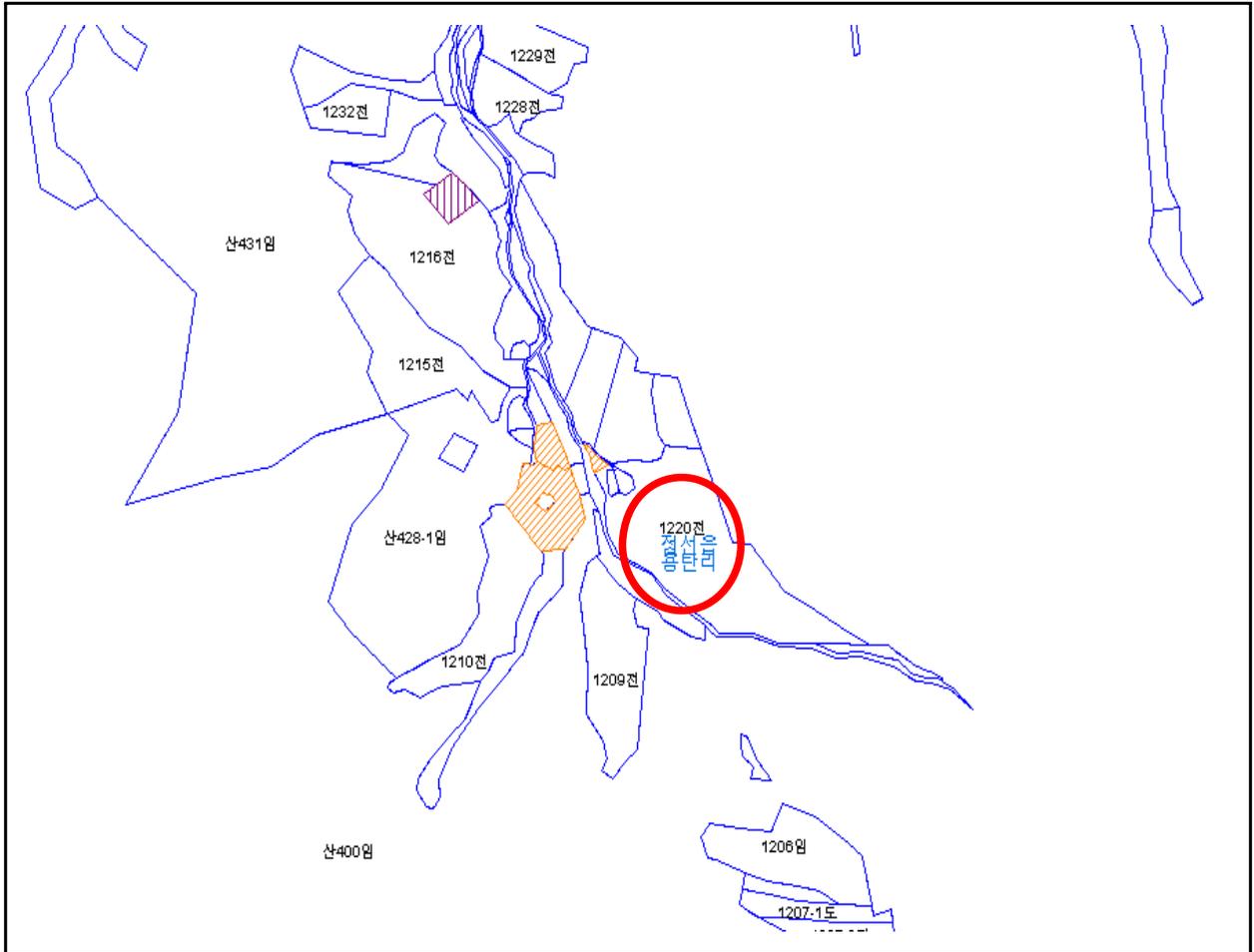
□ 초지해제(고시) 내역

초지조성 허가현황(ha)					고시면적 (해제)	토지 소유자		허가자		초지조성 완료일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허가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필		2.25	2.25	2.25					
정선읍 용탄리	1222	임	0.21	0.21	0.21	정선읍 용탄3리	권용섭	정선읍 용탄2리	이영진	'84.11.30
“	1220	임	2.04	2.04	2.04	“	“	“	“	'84.11.30

□ 지형도면



□ 지적도면



정선군공고 제2010-407호

재산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그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부재,주소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 52조 제 2항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19.

정 선 군 수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납세자명	현 주 소	압류 부동산	송달불능사유
이종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97-72 (12통4반)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08-75 제지하층 제4호 1.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 주택 지층 165.56㎡ 1층 163.49㎡ 2층 163.49㎡ 3층 161.15㎡ 옥탑 21.50㎡ 1. 대지권 분의	수취인부재
임종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5-10 고한주공아파트 103동 302호 (8통7반)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918 임야 1993㎡	폐문부재
유경순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423 (1통3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0-273 도로 2㎡	폐문부재
김영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8-1 푸른솔마을신성미소지움아파트 307동 903호 (7통7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36-7 전 998㎡	폐문부재
임병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05-30 포스필아파트 102동 501호 (10통1반)	1.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05-30 포스필아파트 제102동 제5층 제501호	폐문부재
김상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03-1 B02호 (9통2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85-2 임야 47090㎡	수취인부재
이행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69-5 (19통5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83-4 임야 2039㎡	폐문부재
최만순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신갈동 6-7 정호빌라 다동 203호 (17통)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산193 임야 12397㎡	수취인부재
박병순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945 (34통2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산292 임야 31438㎡	주소불명
장창수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와동 845-4 (67통5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리 산113 임야 3372㎡	주소불명
한완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97 대림2차아파트 102동 501호 (5통7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721 대 486㎡	폐문부재

납세자명	현 주 소	압류 부동산	송달불능사유
최승금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36-79 101호 (4통1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 615-5 전 3733㎡	수취인부재
조동익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625-15 (48통3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35 전 1486㎡	수취인부재
백종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65-46 (5통8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113 전 5507㎡	수취인부재
최현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6-10 101호 (9통1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738 임야 724㎡	수취인부재
강상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456-141 202호 (11통5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441-1 전 4959㎡	폐문부재
이정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29-2 장안힐스테이트 1001동 601호 (10통2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산361-1 임야 28760㎡	폐문부재
염우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590 임광그대가아파트2단지 201동 603호 (7통10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1 임야 24414㎡	수취인부재
정금옥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월피동 446 주공아파트 310동 306호 (18통6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42 전 202㎡	폐문부재
안승문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259-2 (8통6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26 전 902㎡	수취인부재
유병욱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744 한국아파트 102동 1503호 (24통5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25 임야 13289㎡	폐문부재
조창민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823-5 (2통)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251 임야 2003㎡	폐문부재
노윤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0-5 신반포12차아파트 324동 1106호 (27통2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리 434-5 전 5056㎡	수취인부재
박오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5-5 204호 (10통5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2 대 546㎡	폐문부재
유진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37-25 1층 (1통5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82 전 962㎡	폐문부재
김종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2-240 2층 201호 (14통2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산211 임야 42843㎡	폐문부재
송영순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482-5 (3통5반)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250-3 전 836㎡	수취인부재
김주율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지곡동 157 (42통2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140 임야 64463㎡	수취인불명
박판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38-52 (24통6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산55 임야 142116㎡	폐문부재
이성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60-18 (4통5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233-3 전 7408㎡	수취인부재
김 웅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22-7 (13통4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9-2 전 7550㎡	수취인부재
김수현	경기도 부천시소정구 원종동 283-11 (19통6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857-1 전 2397㎡	이사감
신건수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 730 우인아크리움빌 1036호 (10통4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455-1 전 8536㎡	수취인불명

납세자명	현 주 소	압류 부동산	송달불능사유
정지원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79-10 (4통1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952-3 전 1852㎡	수취인불명
청우 종합개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8 진성빌딩5층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145-24 임야 2231㎡	수취인불명
이근혜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여좌동 924-1 태백동아파트 9동 301호 (6통7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729 전 4641㎡	수취인부재
박재성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여좌동 924-1 태백동아파트 9동 301호 (6통7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729 전 4641㎡	수취인부재
송덕효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마두동 825-3 (16통9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32-1 임야 13045㎡	폐문부재
최지민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304 202호 (4통1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366-1 임야 3402㎡	폐문부재
홍정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1 (1통5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274-5 전 6847㎡	폐문부재
김창선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26 (24통3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527-4 전 870㎡	수취인불명
원용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250 (15통)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361 전 2562㎡	이사감
김희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90-13 (17통4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462 전 297㎡	수취인불명
배순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48-43 에버그린빌 101동 401호 (7통6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6 전 694㎡	수취인미거주
전계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2-58 계림빌 501호 (1통2반)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42 임야 18446㎡	수취인불명
그린필드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송내동 708-3 에스에이치송내프라자빌딩3층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산242-5 임야 31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산242-9 임야 2826㎡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산242-12 임야 1150㎡	이사감
유병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238-10 동산아파트 나동 202호 (1통6반)	1.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238-10 봉산주택 제나동 제5층 제503호	수취인부재
이정식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월천리 142 (6통2반)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639-2 전 615㎡	수취인부재

정선군공고 제2010-408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7. 19.

정 선 군 수

1. 개정취지

정선군청소년수련원(소재지: 화암면 석곡리 381번지) 운영 관리계획 안전점검결과 시설활용 부적합 판단에 따라 정선군청소년수련원을 폐관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의 삭제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8조(사용료 등)전체 삭제
- 별지1 정선군청소년수련원란 삭제
- 별지1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 위치 수정
- 별지2 정선군 청소년 수련의집 시설 사용료 전체 삭제
-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3-2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전화 560-2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1 중 ‘정선군 청소년 수련원’란을 삭제하고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 위치란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605-13번지’에서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청소년시설) 정선군에서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 이라한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료 등)①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2.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별표1】

정선군 청소년시설 명칭·기능·위치(제2조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정선군 청소년 수련원	○ 청소년 자질향상과 문화적 감성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정선군 동면 석곡리 381번지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집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 청소년 동아리활동 ○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
신동읍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 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활동 ○ 청소년 다목적 공간 및 공연장 ○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19-1번지

## 【별표2】

정선군 청소년 수련의집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 1. 개인

(단위 : 원/1인1일)

구 분	초·중교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비고
계	2,500	3,500	4,500	5,000	
수련시설	1,500	2,000	2,500	3,000	
식당시설	1,000	1,500	2,000	2,000	

비고 1. 1일 : 12:00 ~ 다음날 12:00

2.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
3. 1일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4. 초중교생, 고등학생, 대학생 : 수련시설 신청일 현재 당해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5. 일반인 :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20세 이상인자.

## 2. 적용요율

(단위 : 원/1인1일)

구 분	적 용 기 준	50명 이상	비 고
적용요율(%)	개인 1인 1일 사용료 기준	90/100	

##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화암관광지의 관리운영
  2. 정선실내체육관,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고한·사북종합운동장의 관리운영
  3. 정선군청소년수련원의 관리운영
  4. 정선군향토박물관, 금광촌의 관리운영
  5. 정선군아라리촌의 관리운영
  6. 모노레일 관리운영<신설 2005.12.23>
  - 6의2. 도사곡 휴양단지 관리운영<신설 2008. 12. 19>
  - 6의3. 고한지구 통행편의시설(모노레일) 관리운영<신설 2009.10.20>
  - 6의4. 화장장 및 공설묘지 관리·운영<신설 2009.12.30>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중 정선군의회 동의를 득한 사업  
<신설 2005.12.23>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04.12.27, 2005.12.23>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정선군공고 제2010-409호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원주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국도59호선 유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정선군청 건설도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7. 19.

정 선 군 수

1. 수용물건 및 소유자(또는 관계인) : 붙임

- 가.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나. 사 업 명 : 국도59호선 유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다. 공고 및 열람기간 : 2010. 07. 20 ~ 08. 03(15일간)
- 라.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정선군 건설도시과

2. 공고내용

- 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59호선 유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 나. 수용재결신청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본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업시행자(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033-563-0751, 정선군 건설도시과 도로관리팀 033-560-2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용신청 토지조서 1부(홈페이지 참조)

## 의 건 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0 . .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정 선 군 수 귀 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공고 제2010-48호

##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에서는 기업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자리 창출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0. 7. 9.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1. 사업개요

- 강원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1년이상 정상가동(운영) 중인 중소기업에서 2010. 5. 31을 기준으로 6개월(2010. 11. 30까지) 동안 일정기준 이상의 높은 일자리 성장을 이룬 기업을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근로환경·경영개선 및 마케팅비용지원,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원시책 우선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려는 사업임

## 2.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50개 기업(기업당 최대 25,000천원 범위내 분야별 지원)
  - ※ 제조업, 전자·통신·IT분야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환경개선 및 경영개선 비용지원, 제품경쟁력 및 마케팅 비용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혜택 등 강원도 지원 시책 우선권 부여 등
  - ☞ 인증기업별로 인센티브(지원대상 분야) 선택 ⇒ 지원대상 분야 불임
  - ※ 중기센터 및 유관기관의 동일한 지원대상 분야 중복지원 불가
- 고용 우수기업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3. 사업추진 일정

- 인증제도 홍보 : 2010. 7월~11월
-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12. 1~12. 15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12월 말까지
-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인증서 교부 : 2011. 1월 중
- 기업별 인센티브 제공 및 사업화 추진 : 5월 말까지

## 4. 선정대상

- 도내 제조업 및 전자·통신·IT분야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으로서  
‘10.5.31기준으로 6개월간(6.1~11.30) 신청기준 이상 고용증가 기업  
〈고용 우수기업 신청기준〉

구 분	정규직 직원수			비 고
	2010. 5월말	2010. 11월말	증가수	
2010. 5월말	20명미만	20~49명	50~299명	
2010. 11월말	3명	4명	10%이상	증가수

## 5.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예정)

- 모집공고 : 2010. 12. 1(수)
  - ☞ 강원도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도내 일간지 등
- 접수기간 : 2010. 12. 1(수)~12. 15(수)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관리부
- 신청서류(센터 홈페이지 참조 및 [붙임 1]서식 다운로드)

## 6. 문의처

- 강원도 희망일자리추진단
  - ☎ 033-249-2851,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관리부
  - ☎ 033-749-3304, 3306, 홈페이지 : <http://www.kbsc.or.kr/>

## □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분야		최대 지원금액 (천원)	비고
지원대상사업	지 원 내 용		
○ 근로환경 및 경영 개선	○ 직원 복지시설 확충비 - 휴게실, 체력단련실 시설비 - 체육시설, 헬스기구 구입비 등  ○ 직원용 사무기기, 산업장비 구입 - 컴퓨터, SW프로그램 구입비 - 산업용 장비 임차료 등	25,000	
○ 제품 경쟁력 및 마케팅 지원	☞ 8개사업 중 선택 20,000천원 까지	20,000	
시제품 제작지원	○ 우수기술 및 신제품의 시제품 또는 모형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20,000	
마케팅 홍보물 제작지원	○ 마케팅 홍보물 제작비 ○ 언론 등 홍보매체 홍보비	10,000	
포장·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개발 지원	○ 제품 디자인 개발비 ○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비	10,000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 국내외 전문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 항공료, 통·번역료 등	10,000	
브랜드 개발지원	○ 기업 및 제품브랜드 개발비	10,000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 특허 국내 출원비용 ○ PCT 등 해외 출원비용	10,000	
핵심기술 및 제품 시물레이션 제작지원	○ 핵심기술 및 제품에 대한 시물 레이션 동영상 제작비	10,000	
홈페이지(쇼핑몰) 제작 지원	○ 홈페이지 신규제작 ○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 비용 등	5,000	

## ※ 기타 인센티브 제공

- ☞ 강원도 기업지원 시책에 대해 지원대상 가점 및 우선권 부여
-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자금대출 신용보증 시 도에서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 수준으로 우대적용



강원도공고 제2010-446호

2010년도 제1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18.

강 원 도 지 사

□ 지정목적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강원도가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지정요건

1. 조직형태

-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영농조합법인 포함,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개정하는 계획 제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사업단”의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음
- 하지만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2. 1명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3.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조직의 소재지가 강원도에 있어야 하며 채용인력 중 강원도민이 있어야 할 것

5.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가)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

※ **취약계층**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장기실업자 등 강원도지사가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북한 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결혼이민여성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불인정)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사회서비스**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다)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20% 이상

라)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 곤란한 경우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예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자립형 지역공동체)

□ **지정기간**

o 지정일로부터 2년간(2년마다 재심사)

□ 지정절차



□ 지정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중 선별지원》

1. 청년 사회적기업가 인건비 지원

- 자격요건 : 18세~40세로서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자

(지원협약 체결시 명시)

※ 1970. 7. 1부터 ~ 1992. 6. 30까지 출생자

○ 대상제외자

- 예비사회적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자
-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서 및 자격증, 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자

○ 선정기준

-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중 성장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적목적 실현가능성, 안정성 등 종합평가

- 컴퓨터 활용능력, 회계업무 경력자, 일반기업 근무경력자 등 청년사회적기업가의 역량 평가

○ 지원 내용

- 12개월간 인건비(120만원 기준) 지원
- 지원인력 : 30명(1개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10. 9 ~ '11. 8(12개월)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공통지원사항》

1.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개발비 공모 등 참여시 가점 부여
2. 강원도가 추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3. 강원도가 지원하는 시설비 지원 등 참여시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자격 부여
4.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심사시 추천
5. 실과,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제품 우선 구매 독려

□ 신청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소개서(서식 2)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정관 또는 규약
  -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 구체적 증명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관련 1인 이상 유급근로자 포함
  - 영업활동 수입 증명 서류,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사업계획서(서식 3)
  - ※ 사업내용, 수익확보수단,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이 포함
- 청년사회적기업가 인건비 지원 신청서(서식 4)
- 청년사회적기업가 자기소개서(서식 5, 서식 6)
  - 청년사회적기업가 경력 증명서(컴퓨터 활용능력, 회계업무 종사경력, 민간기업 종사 경력 등)

※ 신청기관은 기관에 해당하는 서류 2부씩 제출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7. 26 ~ 2010. 8. 6.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 ※ 별첨 시·군 업무담당 부서 안내 전화번호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 지정결과 통지

- 강원도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및 E-메일통보 등

## □ 문의

소 속			전화번호
강원도	도청	희망일자리추진단	033-249-2851
강원도	춘천시	경제과	033-250-3354
강원도	원주시	기업지원과	033-737-2975
강원도	강릉시	지역경제과	033-640-5210
강원도	동해시	주민생활지원과	033-530-2329
강원도	태백시	주민생활지원실	033-550-2483
강원도	속초시	지역경제과	033-639-2351
강원도	삼척시	지역경제과	033-570-3355
강원도	홍천군	경제교통과	033-430-2317
강원도	횡성군	사회복지과	033-340-2091
강원도	영월군	신성장동력추진단	033-370-2746
강원도	평창군	관광경제과	033-330-2763
강원도	정선군	산업경제과	033-560-2150
강원도	철원군	미래산업과	033-450-4075
강원도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4
강원도	양구군	경제관광과	033-480-2252
강원도	인제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60-2214
강원도	고성군	경제도시과	033-680-3377
강원도	양양군	경제도시과	033-670-2709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		③ 유급 근로자 수	
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⑤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상법상 회사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주된 목적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⑦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⑧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⑨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사업의 내용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 원 도 지 사 귀중

구  
비  
서  
류

1.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5. 기타(공고문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등)

## 【서식 2】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소개서

사업명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조직현황	근로자	총근로자(   명)   취약계층 근로자(   명)			
	수혜대상자	총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4대보험 가입확인 :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산재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연금			
	의사결정구조	<input type="checkbox"/> 이사회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자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주주총회 <input type="checkbox"/> 총회			
재정구조	총수입 (1월~3월)	영업수입	정부·지자체 보조	민간 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비즈니스 모델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사회적기업 전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서식 3】

##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사업건별로 기재 (예를들어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를 3장 작성)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산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향후 계획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이 포함될 것

【서식 4】

청년 사회적기업가 인건비지원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		③ 유급 근로자 수	
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⑤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상법상 회사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주된 목적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⑦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⑧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⑨ 지원신청자 (청년사회적기업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신규고용 여부	(여, 부)	신규고용 여부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사회적기업가 인건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 원 도 지 사 귀중

구  
비  
서  
류

1. 지원신청자(청년 사회적기업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자격증 등
2. 지원신청자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1.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신청자 및 신청 기업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자기소개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 《작성요령》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 ③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④ 자격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서식 6】

청년 사회적기업가 자기소개서

성 명 : 000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취업 희망 직종, 원하는 근무부서 등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0 년 월 일

작 성 자 : 0 0 0